

8월1주차 전체위원회 심의의결서

연번	접수번호	대지위치	대지면적	건축면적	연면적	주용도	층수	용도지역	심의일자	구분	심의결과	의결내용
1	20196500000P002681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812-1	624	272.71	264.65	제2종근린생활시설	1/	자연녹지지역	'19. 8. 1.		취하	신청인 자진 취하
2	20196500000P002653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32	585	225.91	225.91	제1종근린생활시설	1/0	계획관리지역	'19. 8. 1.		부결	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의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 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부결합니다.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